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. 4. 8 선고 2022가단59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8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5. 7. 체결한 증여계약을 6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인정 근거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노승욱

별지

부동산 목록

1. 충북 옥천군 D 대 178㎡

2. 충북 옥천군 D

[도로명주소] 충북 옥천군 E

위 지상

연와조 및 벽돌조 스라브지붕 및 스텝기와지붕 2층

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, 창고

1층 76.69㎡(제2종근린생활시설)

2층 42.64㎡(주택)

지층 35.70㎡(창고). 끝.

별지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의 지위

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C에 대하여 2021. 03. 09.자 기준 금 60,000,00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, 피고는 2021. 05. 07. 자신의 배우자이자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위 C와 C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충북 옥천군 D대 178㎡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(이하 '이사전 부동산' 이라 한다)에 대하여 2021. 05. 07. 증여계약(이하 '이사전 증여계약' 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옥천동기소 2021. 05. 10. 접수 제80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약의의 수익자입니다.

2. 피보전채권의 내용

가. 원고는 위 C와 평소 알고 지내던 ~~자~~ ^{위 C}의 요구로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데, 위 C는 2021. 03. 09.자 금 60,000,000원의 대여금채무(이하 '이사전 대여금채무' 이라 한다)에 대하여 변제기의 약정 없이 원고가 청구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습니다(갑제1호증 참조).

나. 한편 원고는 위 차용증의 작성, 교부가 이루어진 직후 최근에 위 C가 이사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

확인하고 위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, 위 C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.

2. 사해행위의 내용 및 채무자 C의 무자력 등에 대하여

가. 위와 같이 위 C는 원고에 대하여 금 60,000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의 F, 등 G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05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소의 H 조항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금 117,000,000원으로 하는 물적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1. 05. 07.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여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육원동기소 2021. 05. 10. 접수 제8057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(갑제2호 증의 1, 2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).

나. 한편 위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충북 옥천군 I의 3필지 지상 J 빌라 K호를 1999. 11. 17. 피고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, 위 J 빌라의 시가가 금 75,000,000원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채무자를 위 C로 하는 소의 L에 대한 채권최고액의 합계금 75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어 위 J 빌라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소실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위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1. 05. 10.

자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21. 05. 28. 위 J 빌라에 대한 피고와 위 C 사이의 1999. 11. 17.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주지방법원 육천등기소 위 같은날 접수 제9059호로써 위 C 명의의 청주지방법원 육천등기소 1999. 11. 19.자 접수 제134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피고명의의 청주지방법원 육천등기소 1991. 09. 19. 접수 제7839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주었습니다(갑제4호증의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갑제4호증의 2 공동주택가격표 참조).

다.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J 빌라는 위 C의 유일한 재산이고, 위 J 빌라에는 이미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소실이 된 상태에서 위 C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위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증인인 피고는 위 C의 배우자로 원고에 대한 C의 이 사건 대어금채무의 부담 사실 및 이 사건 증여행위가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.

3.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물반환요구의 어려움에 따른 가액배상청구

가, 따라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위 C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중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의 H 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금 168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C 를 채무자로 하는 소의 F, 등 G 명의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위 H 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등기명의를 위 C 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되어도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시키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(갑제2호증의 1, 2 참조),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총합계금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이 사건 중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위 C 에 대한 채권금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 []

나. 한편 원고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시가는 금 3억 5,000만원 정도에 이르고(갑제3호증 시세확인서 참조), 위 가액에서 이미 말소된 채무자를 C 로 하는 소의 F, 등 G 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금 1억 500만원 및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소의 H 조합의 채권최고액 금 117,000,000원의 총합계금 222,000,000원

을 공제할 경우 그 가액은 금 128,000,000원이 되는바, 따라서 원고는 위
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금 6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C
와 피고 사이의 이사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
금 60,000,000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(원고는 추후 이사진 부동산에 대한
감정평가를 통하여 목적물 가액을 확정된 후 취소를 구할 범위 및 가액배
상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).

4. 결 어

따라서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진 청구에
이르게 되었습니다.

